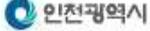


		보 도 자 료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	
		배포일자	2021년 3월 16일(화) 총 6매		
담당 부서	아동청소년과	담당자	• 아동보호팀장 권윤선 ☎440-3491 • 담당자 김용훈 ☎440-3492		
사진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
보도 일시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인천시,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 앞두고 준비에 박차

- 학대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민관 모든 역량 동원 할 것 -
- 즉각분리 상황 대응 TF 운영, 일시보호 인프라 구축 등 보호공백 방지 최선 -
- 전문가 의견 종합해 아동학대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 차원의 대책 마련 나서 -
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3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‘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’에 대비하여 분리보호 아동의 보호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한다고 밝혔다.
- 정부(보건복지부)에서 추진하는 ‘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’는 아동학대가 명확히 의심되고,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전담 공무원,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을 아동일시보호 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,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이다.
- 인천시는 분리보호 아동의 보호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▲즉각분리 상황 대응 TF 운영, ▲일시보호 인프라 구축, ▲기존시설 보호여력 확보, ▲위기아동가정보호사업 추진, ▲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전담

기관 협업 등을 추진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8일과 9일 교육을 진행했다.

- ‘즉각분리 상황 대응 TF’ 는 여성가족국장이 총괄단장을 맡고 시 2개부서(아동청소년과,장애인복지과)가 참여하고 2반 3팀으로 구성하여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센터, 학대피해장애인쉼터 등 일일 상황관리, 시설·인력 확충,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 등을 추진한다.
-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기존 2개소에 3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일시보호시설의 보호 여력을 강화한다. 쉼터는 올해 상반기 중 남동구와 서구에 각 1개소, 하반기에는 미추홀구에 1개소를 설치하고, 아동전원 활성화로 보라매아동센터의 일시보호기능을 정비하는 등 일시보호 인프라를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.
- 또한, 일시보호시설의 장기거주아동 전원이 원활하도록 아동양육시설의 입소율을 80%에서 84%까지 상향 조정하고 이를 위해 아동양육시설 9개소에 종사자 27명을 추가 배치하며 지속적인 종사자 증원으로 기존시설 보호여력 확보를 추진한다.
- 전문적인 특별 돌봄이 필요한 0~2세의 학대피해아동은 전문위탁부모에게 맡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안전하게 아동을 보호하는 위기아동가정보호사업을 추진한다.
-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분리보호 시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

전문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개입하여 필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전담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.

- 이 밖에도 시는 선별진료소(보건소) 긴급 검체 대기인력이 24시간 분리보호아동 코로나19 검사를 지원하고 임시 대기 공간을 마련하는 등 아동 안전 확보 조치도 취했다.
-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“우리시는 즉각 분리에 대비한 아동 보호 공백 방지 대책들이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,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와 홍보를 확대하는 등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시민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시 차원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” 고 말했다.
- 한편, 안 부시장은 지난 3월 10일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경찰청, 교육청, 아동보호전문기관(4개소) 등과 함께 현안 사항을 점검했다.

- <붙임> 1. 관련사진(3.10. 안영규 인천시행정부시장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)
2.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제도 개요
3. (이미지)즉각분리 상황 대응 TF 구성 체계도

<붙임> 사진자료(3월 10일 행정부시장 현장점검 관계기관 회의)



참고1

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제도 시행

□ 개념 (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)

-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보호조치 시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·학대피해아동쉼터에 아동을 입소시키거나, 적합한 위탁가정·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

□ 시행일 : 2021.3.30.(아동복지법 개정 시행)

□ 추진 경과

- 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를 위해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
 - 아동학대가 명확히 의심되고,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즉시 임시로 분리·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

□ 즉각 분리 요건

- ①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,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②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
- ③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·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
- ④ 그 밖에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□ 「응급조치」와 「즉각 분리제도」 비교

구 분	응급조치(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)	즉각 분리제도(아동복지법 제15조)
결정주체	경찰, 아동학대전담공무원	지자체(아동학대전담공무원)
요 건	아동학대범죄현장, 또는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·현저한 경우	1년 내 2회 이상 신고 등 법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 시
기 간	72시간 (임시조치가 청구된 경우 법원 결정시까지)	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

《 TF 구성 체계도 》

